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11

발의연월일: 2022. 2. 9.

발 의 자:서일준・구자근・김석기

지성호・金炳旭・이종성

김승수 · 조명희 · 하영제

권명호 · 김기현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통계작성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다만,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기반이 불명확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5조의6, 제24조,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통계자료"를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하여 통계등록부를 구 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등록부의 종류, 구축항목·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을 "제4항에 따른 정보 보호조치를"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1. 제5조의6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작성하는 통계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 ②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에 행정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행정자료의 용어·분류 등에 대한 표준분류 사용 요청) 통계 청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분류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기 위하여"를 "사용하거나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에서 이미 조사 또는 작성한 항목을 활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 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작성하는 통계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조사"를 "총조사, 제5조의6에 따른 통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통계등록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
 - 2. 통계자료 간 또는 통계자료와 통계이용자 반입자료 간 연계
 - 3. 통계이용자의 자료 반입과 분석 결과의 반출 관리 및 지원
 - 4. 분석대상 또는 방법에 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 ③ 데이터센터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식별정보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제4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항"

으로, "통계자료"를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행정자료"란 <u>통계자료</u> 를 제	7 <u>통계자료 및 통</u>
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	계등록부
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	
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	
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를 말한다.	·.
<u><신 설></u>	8.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개인이나 법
	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
	별 모집단 자료를 말한다.
<u><신 설></u>	제5조의6(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u>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u>
	성・보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하여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할 수
	<u>있다.</u>
	② 통계등록부의 종류, 구축항
	목·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u>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u>통계의 작성을 위하</u> 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장은 <u>제1항</u>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이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제5조의6에 따른 통계등록부 의 구축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 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
의를 거쳐 작성하는 통계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 른 협의를 요청한 후 예비적
으로 작성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제1항 및 제</u> <u>2항</u>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 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 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 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 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 · 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 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u>4</u>	제	3₹	j- o) t	다리	- ਰੋ	행정	j ス	是	를	제
공	하님	=	경	우	ユ	제	공	범	위	및	방
법	Ę	들어]	관	하 🌣	는	-	요	청기	기관	<u></u>
<u>장</u>	라	제	공	기:	만의] 7	§}-o]	협 (의ㅎ	<u> </u>
<u>결</u>	정경	하 <u>및</u>	티,	였	.청	기 국	란의	븨	장	은	사
<u>전</u>	케	행	정	자.	료의		큰실	늴,	도	난,	유
<u>출</u>	방	기	를	위	하여	겨	대	통	령 i	경 <u>C</u>	<u> 고로</u>
<u>정</u>	하 {	=	바	에	叫	라	시	- 衣	<u> </u> 에	ą	<u> </u>
<u>성</u>	확	보	에	필	요	한	<u>기</u>	술	적	• 돌	<u> </u>
<u>적</u>	조	.치	(0] 히	- "7	정 5	上上] ह	ころ	:치	"라
한1	<u> </u>	를	ठं	}- ¢=	야	한	다	•			

<u>⑤</u> 제3항
<u>⑥</u>
<u>제4항에 따른</u>
정보보호조치를
<u>제5항</u>
<u>.</u>

<신 설>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 ③ (생략)

<신 설>

- ④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생략)
 -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저	24조	<u>의3(</u>	<u>행정</u>	자료	일의	<u> </u>	누어	•	분
	<u>류</u> 등	-에	대한	丑	준분	류.	사용	<u>}_</u>	요
	청) -	통계	청장	슨	행정	성자.	료를	-	활
	용한	통)	계작	성을	·	해	필.	유	한
	경우	공공	공기관	반의	장이	세게	행	정	자
	료에	포함	함되 o	H 있	는	용어	· ·	분	류
	<u>에</u> 디	비해	제22	2조 •	l) u	구른	丑.	준	분
	류를	사용	용하고	근록	요	청힐	는 수	1	있
	<u>다.</u>								

-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할 수 있다.
 - <u>⑤</u> 제2항 또는 제4항-----
-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현 행과 같음
 - _____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사용하거나 통계작성
을 위하여 다른 통계에서 이미
조사 또는 작성한 항목을 활용
<u>하기 위하여</u>

- 1.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를제공할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

 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

 의를 거쳐 작성하는 통계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통계 제31조(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 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 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 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 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 른 협의를 요청한 후 예비적 으로 작성하는 통계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청으로부 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는
-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의 이용) ①통계자료 및 통 계등록부 자료----------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 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u>통계자</u> 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 다.

- 1. (생략)
- 2. <u>총조사</u>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u>통계자료</u>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 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통계자료</u>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u>통계자료</u>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u>통계자료</u>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통</u> 계자
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
1. (현행과 같음)
2. 총조사, 제5조의6에 따른 통
계등록부
③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
 1.·2. (현행과 같음)
(4)
통계자료 및
<u> </u>
· ⑤ <u>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 자료</u>

로 정한다. <신 설>

-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 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 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통계등록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
 - 2. 통계자료 간 또는 통계자료와 통계이용자 반입자료 간연계
 - 3. 통계이용자의 자료 반입과분석 결과의 반출 관리 및 지원
 - 4. 분석대상 또는 방법에 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 ③ 데이터센터에서 자료를 분석 할 때에는 식별정보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

-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 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u>통계자료</u>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에게 제공한 자
 - 5. (생략)
 - ⑤ (생략)

<u>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
<u>항</u>
<u>항</u> 동계자료

— <u>통</u> 계자료
— <u>통</u> 계자료

- 5.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